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설공사 하자업무 소홀

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

내 용

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축사 신·개축, 퇴비사, 관리사, 계분장 설치 등 축산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아래 [표1]과 같이 추진하였으며,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상대방과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를 거쳐 해당 시설물을 운영·관리하고 있다.

[표1]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

사업대상자	지원조건	사업예산(단위 : 백만원)					주요내용
		계	국고	지방비	융자	자부담	
농업인 (5명)	국 고 30% 융 자 50% 자부담 210%	3,118	935	-	1,559	624	- 축사 신·개축, 축산시설, 장비 구입 등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(계약담당자)은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

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,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시설물별로 정하고 있다.

그러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¹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,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. 다만,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보수를 위한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농업인 5명중 3명(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, 5개 사업이 완료

1)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(2014. 12. 9) :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,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.

된 이후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사시설현대
화사업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은

[주의]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0조에 따
라 공사 추진 시 도급계약 체결 및 하자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
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
랍니다.